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된 해외게임에 대해 개발사에게 지급하는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안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문의

서면국제세원-2594, 2023.03.17

질 의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문의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국조2012-334, 2012.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 2018.10.12.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온라인상 오픈마켓(Mobage Open Platform)을 통하여 게임컨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User)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유보는 추인됨

사전법규법인-1264, 2023.03.22

질 의

-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매각손익의 익금(손금)산입 여부

회 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인-4353, 2016.8.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4353, 2016.8.23.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청년 등 수는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는 경우(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된 경우 포함)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29의7①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

서면법인-978, 2023.05.26

질 의

- 청년 등 수는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는 경우(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된 경우 포함) 고용증대세액

공제 추가공제액

Ⅰ 회 신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가 각각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 각 호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 당초 적용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지만, 같은 항 제2호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공제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 계속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법인-5631, 2023.08.18

Ⅰ 질 의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부동산임대업 영위 법인으로 '13.1월부터 개인A에게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
- '21.12.31. 질의법인은 임대차기간을 '22.11.부터 '22.12.31.까지 하고 월 임대료를 14백만원(부가가

치세 별도, 보증금 없음)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쟁점 임대차 계약)

- 쟁점 임대차계약 상 월 임대료는 매월 초일(1일)에 지불하기로 약정

- '22.1.26. 코로나19로 인한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질의법인과 임차인은 쟁점 임대차계약 상 월 임대료를 6백만원으로 인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 쟁점 변경 임대차 계약)

• '22.9.7. 질의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 '22.10.28. 임차인 개인A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아 파산절차 진행중이며 '

22.11.02. 질의법인은 개인A에게 미납 임대료*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 '22.11월 질의법인의 개인A에 대한 임대료 미수금은 391백만원임

질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서 규정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산정시 회수기일의 의미

- (갑설)채권발생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

- (을설) 동일 채권의 최종 입금일, 마지막으로 임대료가 입금된 날

Ⅰ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에서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